

검 토 보 고

1997. 3. 13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 출 : 1997년 3월 6일

○ 회 부 : 1997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-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험항목·검체소요량 조정 및 용어정비와
-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(환경부령)에 따른 시험항목별 검사수수료율 인상을 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먹는샘물, 수처리제 및 토양오염 물질에 관한 시험항목 신설과 용어정비
-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조정
- 각종 검사수수료를 물가안정과 주민부담을 감안 소폭 인상조정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본 개정조례(안)은

-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제·개정과
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(환경부령) 개정에 따른
검사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
- 환경부령에는 신규검사항목 포함 평균 60.4% 인상으로 되어 있으나
물가안정 및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하에
이번에는 평균 8.5%를 인상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
- 인근 타시도 지역 민원인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도를 이용할
경우 도민의 간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며
- 향후 빈번한 조례개정에 따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
타시도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한 자동 연동방식의 수수료 책정방법에
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